

▶條例및一般議案◀
審查結果報告

1.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2.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
3.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

條例및一般議案審查特別委員會
報告者：林永善 議員

[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]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1. 12. 5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12. 5

다. 의안번호 : 제 48 호

라. 상정일자 : 2001. 12. 12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사용허가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대관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
- 입장료 수입총액에 대한 사용료 징수율이 타 군단위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보다 높아 사용료 요율을 낮추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문화센터의 기능을 문화예술, 학술행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둠(안 제3조제3호)
- 문화센터의 사용허가의 범위를 개선함(안 제7조제3항)
- 입장료 수입총액에 대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인하함
- 100분의 20 ⇒ 100분의 5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센터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, 조례

상의 일부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, 사용허가 신청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, 이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,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

- 기재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20일 문화센터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, 조례상의 일부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, 사용허가 신청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,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이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,

-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화센터의 기능 중 제3조 3호의 내용과

사용신청 및 허가 내용 중 제7조 제3항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화시켜 대관시 형평성 문제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,

-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도 징수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, 징수요율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시키므로써, 향후 문화센터 활용도

를 더욱더 높여 나가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,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기재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기재생략

[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]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출일 : 2001. 12. 5
-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12. 5

다. 의안번호 : 제 46 호

라. 상정일자 : 2001. 12. 13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○ 처분코자 하는 재산

국가기관이 공용 및 공공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매각.
 ⇒ 구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며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
 재산으로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의 공용부지 확장 및
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협의 요청에 따라 매각코자 함.

나. 처분재산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재산 종별	재 산 소 재 지	지목	수 량	예정금액 (공시지가)	비 고
매각	토지	마리면 대동리 702-8	대	973	6,235천원	
		마리면 대동리 산28-12	임야	209	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마리면의 구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으로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의 공용부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므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으로, 관련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,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

○ 기재생략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○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의 매각대상 재산은 마리면의 구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으로써,

○ 우리군 관내에 유치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의 공용부지 확장 및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므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으로

○본 관리계획상의 매각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토지이용계획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기재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기재생략

[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심 사 보 고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1. 12. 5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12. 5

다. 의안번호 : 제 47 호

라. 상정일자 : 2001. 12. 13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○ 처분코자 하는 재산 (토지 6필지, 22,811㎡)

- 일단의 면적이 700㎡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매각 ⇒ 3필지, 420㎡

- 경영치수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토지를 매각⇒ 3필지, 22,391㎡

나. 처분재산

구분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지목	면적	예정가격 (공시지가)	비고
계		6필지		22,811	1,345,924	
매각	토지	위천면 장기리 514-7	대	34	1,026	30,200원
		위천면 장기리 514-8	대	18	228	12,700원
		위천면 모동리 271-2	답	368	1,210	3,290원
		가조면 일부리 1237-38	하천	18,392	1,103,520	표준지공시 지가적용 60,000원
		" " 681	답	130	7,800	
		" 석강리 1378-53	하천	3,869	232,140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02년도에 매각 처분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위천면사무소 옆 구. 농민상담소와 인접하여 개인에게 점유되어 있는 2필지 52㎡와, 위천면 모동리에 소재한 368㎡의 농경지는 일단의 면적이 700㎡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, 점유자 및 실 경작자가 매수희망 하고 있으며,

○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일부리와 석강리에 소재한 공유지인 하천 및 답은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,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

○ 기재생략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○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중 2002년도에 매각 처분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위천면사무소 옆 구. 농민상담소와 인접하여 개인에게 점유되어 있는 2필지 52㎡는 영세규모의 대지로 점유자의 재산권 행사등에 지장이 있어 매수희망된 토지이고,

○위천면 모동리에 소재한 368㎡의 농경지는 일단의 면적이 700㎡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, 실 경작자가 매수희망 하고 있으며,

○그외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일부리와 석강리에 소재한 공유지인 하천 및 답은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,

○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매각대상 토지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처분시 신중을 기하고,

○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잡종재산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고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 능률적인 재산은 향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줄 것을 주문하면서,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기재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기재생략